

도전! K-스타트업 2023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리그인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의 참가자(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대회 개요

□ 목적

- 「도전! K-스타트업 2023」 창업경진대회 예선리그를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포상하여 창업 분위기 확산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사항

- ①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종합예선 수상팀 상금·상장, ②종합예선 및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 후속 지원

□ 운영방식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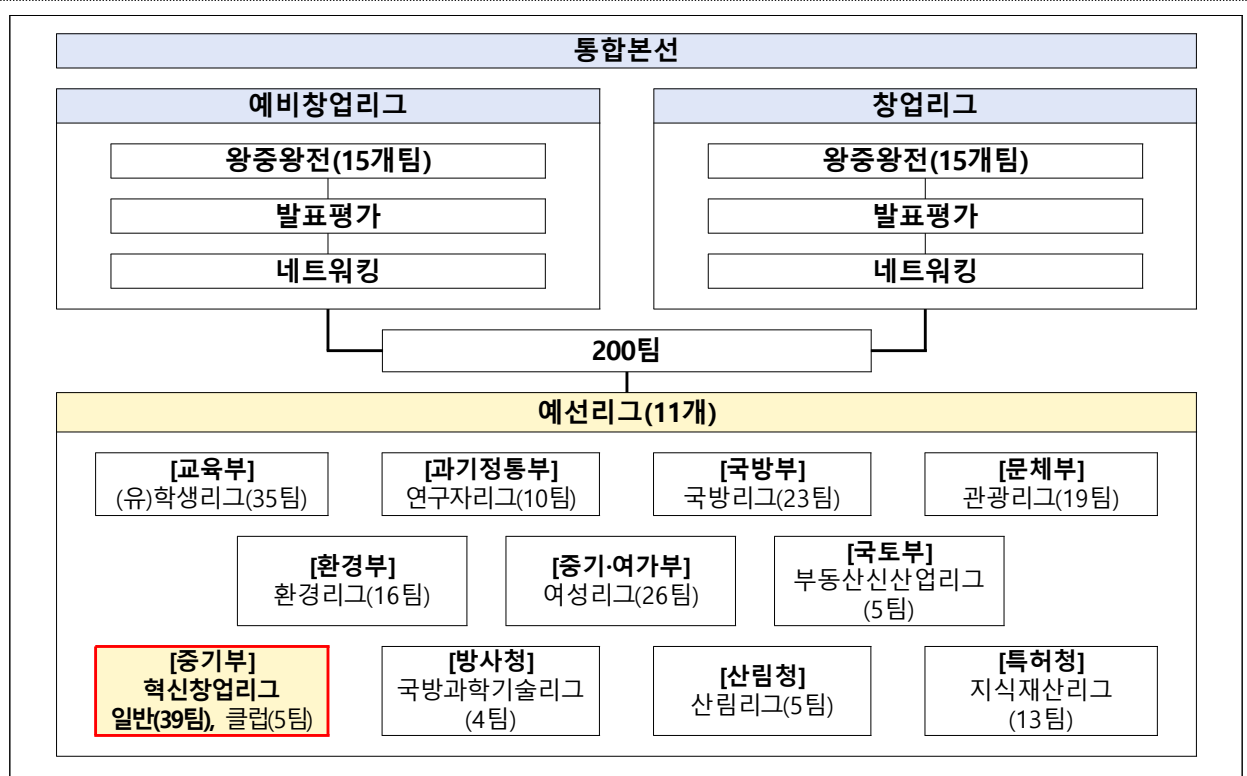
- 각 지역예선을 시작으로 전국 종합예선을 통해 최종 수상팀(5팀) 및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진출팀(39팀) 선발

<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운영 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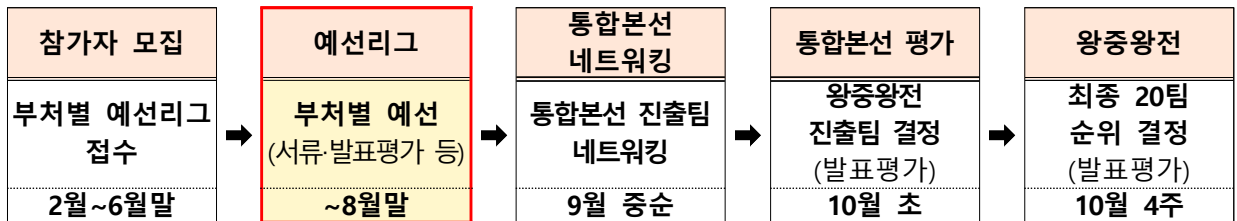
| 신청 및 접수 | 지역예선 | 종합예선 | 네트워킹&멘토링 | 통합본선 추천 |
|--------------|------------------|----------------|----------------------|----------------|
| 참가자 모집 | 서류/발표평가 →요건검토 | 78팀 선발 | 통합본선 진출팀 네트워킹&멘토링 | 39팀 추천 |
| 3.29.~4.27. | 5 ~ 6월 | 7월 말 | 8월 중 | 8월 말 |
| 창조경제 혁신센터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

* 상기 절차 및 일정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도전! K-스타트업 2023」 운영 체계 >



□ 대회 운영 일정



* 대회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선리그별 세부 공고문 확인

□ 왕중왕전 시상규모

| 창업리그 | | | 예비창업리그 | | |
|------|---------|---------|--------|---------|--------|
| 구분 | 훈격 | 상금 | 구분 | 훈격 | 상금 |
| 대상 | 대통령 | 3억원 | 대상 | 국무총리 | 1.5억원 |
| 최우수상 | 교육부장관 | 각 1.3억원 | 최우수상 | 교육부장관 | 각 8천만원 |
| 최우수상 | 중기부장관 | | 최우수상 | 중기부장관 | |
| 우수상 | 과기정통부장관 | 각 7천만원 | 우수상 | 과기정통부장관 | 각 5천만원 |
| 우수상 | 국방부장관 | | 우수상 | 국방부장관 | |
| 우수상 | 문체부장관 | | 우수상 | 국토부장관 | |
| 우수상 | 환경부장관 | | 우수상 | 여가부장관 | |
| 장려상 | 방사청장 | 각 3천만원 | 장려상 | 방사청장 | 각 2천만원 |
| 장려상 | 산림청장 | | 장려상 | 산림청장 | |
| 장려상 | 특허청장 | | 장려상 | 특허청장 | |

* 상금 규모는 세금 포함

** 왕중왕전 진출팀 중 미수상팀(10팀)은 별도 격려금(1백만원~3백만원) 지급

※ 상격, 훈격 및 상금 규모 등은 부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가 자격

-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공통 참가 자격을 준용

*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23.1.26.)

< 「도전! K-스타트업 2023」 공통 참가 자격 >

| 공통기준 (판단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시 포함되지 않음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자격</th> </tr> </thead> <tbody> <tr> <td>예비 창업자(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 1. 26.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td> </tr> <tr> <td>창업기업 대표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 1. 26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 1. 26.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td> </tr> </tbody> </table> | 구분 | 세부자격 | 예비 창업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 1. 26.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기업 대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 1. 26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 1. 26.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 | 구분 | 세부자격 | | | | | |
| 예비 창업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 1. 26.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 | | | | |
| 창업기업 대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 1. 26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 1. 26.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 | | | | |

※ [붙임]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참가 제외

-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참가 제외 요건을 준용하며,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도전! K-스타트업 2023」 참가 제외 요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2" 기 수상자 (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
 -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3. 29.(수) ~ 4. 27.(목),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 접속·문의로 인해 접속 또는 문의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 2~3일 전에 신청 권고

** 대회 참가신청접수는 4. 27.(목), 16:00 정각에 종료(신청서 작성 단계 후 저장 필수) 단, 제출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마감 시간(4.27, 18:00)까지 수정 가능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 『도전! K-스타트업 2023』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① 실명인증(공통)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② 기업인증(기창업자)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 사업자 확인 중 택1

※ 참가신청 시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의 지역예선 평가를 진행할 '예선 기관(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필수 선택

<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세부 신청방법 >

① K-Startup (www.k-startup.go.kr) 접속 → ② 회원가입(실명인증, 기업인증) → ③ 사업공고 → ④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공고 클릭 → ⑤ 공고문 내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⑥ 참가신청서 작성 → ⑦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 ⑧ '제출완료' 클릭

※ [별첨 1]의 '대회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 요건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는 지역예선 발표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 '요건검토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지역예선 발표평가 후 별도 안내 예정

<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제출서류 >

| 구분 | | 제출서류 | 비고 |
|---------------|------------|---|---------------------------|
| 대회 참가 신청 시 제출 | | ① 참가신청서 | 온라인 지원 |
| | | ② 사업계획서 및 기타증빙 서류 | [별첨 2] 양식 참조 |
| | | ③ 팀원 확인서 및 팀원 신분증 사본 | ※예비창업팀 한정 [별첨 2] 양식 참조 |
| 지역예선 발표평가 통과팀 | 예비 창업자 (팀) | ① 팀장·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통합공고일('23.1.26) 이후 |
| | | ② 팀장·팀원 사실증명원내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보유 시 |
| | | ③ 팀장·팀원 사실증명원내 폐업 사업장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이력 있을 시 |
| | 기 창업팀* | ① 대표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통합공고일('23.1.26) 이후 |
| | | ② 대표자 사실증명원내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회 신청기업 포함 |
| | | ③ 대표자 사실증명원내 폐업 사업장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이력 있을 시 |
| | | ④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
| | | ⑤ 창업기업 확인서 | - |

* 기창업자 中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4

평가 방식

□ 평가방법

- (지역예선)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요건검토 → 종합예선 추천(78팀)
- (종합예선) 발표평가 → 최종 요건검토 → 수상팀(5팀) 선정 및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추천(39팀)

* 평가단계별 고득점 순으로 순위결정

** 중도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선정

<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평가방법 >

| 구분 | 지역예선 | 종합예선 |
|--------|--|---------------|
| 평가대상 | 지역별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신청자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예선 통과팀(78팀) |
| 평가방식 | 서류/발표평가, 자격요건 검토 | 발표평가(오프라인) |
| 평가일정 | 5~6월 | 7월 |
| 평가위원 수 | 3~5인 이상 | 5인 이상 |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신청·접수 건수에 따라 센터별 종합예선 진출 T/O 상이

□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SST방식)

* 지역예선은 서류/발표평가, 종합예선은 발표평가로 진행(예정)

** 발표평가는 대표자 발표가 원칙, 팀원은 평가위원 재량에 따라 질의응답 시 배석하여 답변 가능

<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평가항목 >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
| 문제인식(P)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목적 및 필요성 등 |
| 해결방안(S)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등 |
| 성장전략(S)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등 |
| 팀 구성(T)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 |

5

시상 및 지원내용

□ 시상

- 종합예선 평가결과 상위 5팀에 대한 상장 및 상금 수여

<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종합예선 시상규모 >

| 구분 | 훈격 | 수량 | 상금 |
|------|---------------|----|----------|
| 최우수상 | 창업진흥원장상 | 1점 | 4,500천원 |
| 우수상 | 창업진흥원장상 | 1점 | 2,500천원 |
| 장려상 |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상 | 3점 | 1,000천원 |
| 합계 | | 5점 | 10,000천원 |

* '16~'22년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 종합예선'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은 통합본선 진출은 가능하나 상장·상금 지급 제외

□ 네트워킹

-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진출팀(39팀)을 대상으로 진출팀 간 교류·협력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후속 지원

-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및 왕중왕전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지원사업 연계 지원
 - **(역량 강화 프로그램)** 종합예선 또는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 IR피칭 멘토링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 지역센터별 운영 계획에 따라 일정 및 방식 등은 상이 [운영주체 : (종합예선 진출팀)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 (통합본선 진출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사업 연계)** 종합예선 또는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으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연계 지원* 제공
 - * 세부내용은 동 공고 '8.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연계 지원내용' 참조

6

유의사항

□ 유의 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본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2개 이상의 예선리그에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신청한 예선리그 모두 탈락될 수 있음

- 다른 창업아이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참여 가능하나, 통합본선 진출 시 1개의 창업아이템을 선택하여 진출해야 함
- * 아이টে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 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기창업한 팀원 또는 타인의 창업아이টে으로 대회 참여 불가, 해당 사항 적발 시 탈락될 수 있음
- 참가신청 접수 및 요건검토 시 추가 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양식 상이, 미제출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중소기업부가 참여(주최, 후원 등)하는 他 창업경진대회와 중복수상 불가
- * 예시 :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을 동시에 했을 경우 두 대회 중 택일하여 참여해야 함
- 수상팀은 향후 5년간 대회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회 사후 성과·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왕중왕전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 가능

<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위탁기업 [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 가능하며,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으로는 무료 서비스 제공
 - * 원본증명서비스 조기소진 시 지원종료 될 수 있음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진출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 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행기술조사) 수상자와 타 특허권자의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왕중왕전 진출팀(30개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가 왕중왕전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접수 시스템 문의

- 국번 없이 1357

 지역예선 문의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참조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담당자 연락처 >

| 번호 | 예선 기관 | 연락처 | 이메일 |
|----|-----------------|--------------|-----------------------|
| 1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32 | namyeon.kim@ccei.kr |
| 2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031-780-9082 | smlee@ccei.kr |
| 3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55-291-9382 | sangwuk@ccei.kr |
| 4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54-470-2639 | bje0002@ccei.kr |
| 5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2-364-9147 | yjy048@ccei.kr |
| | | 062-364-9159 | yeji8059@ccei.kr |
| 6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053-759-8135 | okhyeon56@ccei.kr |
| | | 053-759-8142 | kjh9338@ccei.kr |
| 7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042-385-0587 | gwon1024@ccei.kr |
| 8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051-749-8969 | minvention@ccei.kr |
| 9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9-7263 | seoul-startup@ccei.kr |
| 10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2160 | hanbc@ccei.kr |
| 11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052-222-9015 | tnwls3654@ccei.kr |
| 12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032-458-5022 | 2hwa000@ccei.kr |
| 13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39 | story625@ccei.kr |
| 14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63-220-8947 | hdg91@ccei.kr |
| 15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91 | dj6569@ccei.kr |
| 16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36-7877 | blitery@ccei.kr |
| 17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43-710-5934 | kdy@ccei.kr |
| 18 | (포스코)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 054-221-6532 | juu0723@posco.com |

* 지역예선 평가일정 및 평가결과 등은 센터별 운영 계획에 따라 상이

 종합예선 문의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9-7263, seoul-startup@ccei.kr

□ 연계 내용

- 참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예선 평가를 진행할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후속 연계 내용 상이 (※선택한 센터 외 연계 지원 신청 불가)

| 예선 기관 | 연계 대상 | 연계 지원내용 |
|-------|-----------------|--|
| 강원 | • 강원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연계 추천 |
| 경기 | • 경기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오픈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 밋업 및 연계 • 스타트업 815 투자 IR 추천 및 Closed IR 진행 |
| 경남 | • 경남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CORN 프로젝트 3단계 연계 (IR 자료 제작 컨설팅) |
| 경북 | • 경북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G-Star Pitchday(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우선권 • G-Star Dreamers 기업 추천 • 경북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기업 추천 • G-Star Camp 입주 가점 및 추천 |
| 광주 | • 광주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발표평가자 대상 발표 피칭 밀착 코칭 • 센터 투자 프로그램 First IR 연계 |
| 대구 | • 대구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자체프로그램) 1:1 밀착멘토링 및 IR택 컨설팅 및 제작지원 |
| 대전 | • 대전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창업열린공간 등) 입주 가점 |
| 부산 | • 부산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B.Cube 입주기업 지원 시 가점 2점 부여 |
| 서울 | • 서울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IR 피칭 컨설팅 및 투자사 멘토링 지원 •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추천 트랙 • 스타트업빌리지 입주 가점 및 추천 • 초격차(신산업) 스타트업 이그니션 프로그램 선발 가점 |
| 세종 | • 세종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세종창업빌 입주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
| 울산 | • 울산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울산센터 투자 심사 추천 •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수요공급 매칭데이 기업 추천 • U-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 연계 • BUG's day IR 기업 추천 • 울산 동구·북구·남구·중구 입주공간 추천 |
| 인천 | • 인천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특화분야(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물류 등) 연계사업 추천 • 인천센터 창업보육공간 입주 추천 • 보육기업 등록 및 멘토링 지원, 추천서 발급 |
| 전남 | • 통합본선 진출팀 | • 전남창업포럼 참여기회 부여 |
| 전북 | • 전북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스타트업 포레 입주 지원 가산점 • 스타벤처 MVP 프로그램 참여 가산점 |
| 제주 | • 통합본선 진출팀 | • IR 자료 보완, IR 피칭 멘토링, BM 스토리텔링 컨설팅 제공 •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록 • 보육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가능 (교육, 컨설팅, 입주공간, 투자, 융자, 홍보 등) |
| 충남 | • 충남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충남창업마루나비 입주기업 가점 및 추천 • 충남 스타트업 컨퍼런스 IR 및 VC네트워킹 참여 추천 |
| 충북 | • 충북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스타티움365 추천 |
| 포항 | • 포항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 통합본선 진출 및 왕중왕전 입상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자료 및 발표 스킬, 예상 질의응답 등) |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창업 여부 기준표

| 신청기업구분 | 상세 구분 | | 창업여부 | |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 창업 기본요건 | |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 창업아님 창 업 |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 | | 창 업 창업아님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 창업 기본요건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 업 창업아님 |
|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 창업아님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 창업아님 |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 창업아님 | |
| | 이종 | | 창 업 | |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